



제30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21.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함
- 코로나 엔데믹으로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학습 도구와 자원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한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 가. 관련조례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 나. 관련부서 : 여성아동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20년 코로나19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의 일상화에 따른 학습형태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4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가 정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 전자적 학습도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가구 아동”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18세 이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온라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지원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저소득 가족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

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스마트 기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 기기 등의 지원) ①시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기기
2.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포함)
3. 인터넷 강의 수강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은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저소득 가구 아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우

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스마트 기기 지원 등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이하 생략)